

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훈련위탁계약 및 훈련동의서

본 계약의 " **㈜가나다라** " (이하 "갑")와 "국제금융회계학원" (이하 "을")은 "갑"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 (계약의 범위)

"갑"이 위탁한 직업능력 훈련과정 및 수행계약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.

가. 훈련과정은 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훈련과정으로 다음과 같다.

훈련 과정명	훈련기간	훈련일수	훈련시간	1인당 훈련비(계약금액)
회계원리(토일)	2010. 00. 00. ~ 2010. 00. 00.	14 일	42 시간	400,000 원

나. 고용보험 환급에 관한 사항: "갑"이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

제2조(계약인원)

"갑"이 "을"에게 위탁한 훈련인원은 (1) 명으로 한다.

제3조 (수료)

"을"은 훈련과정 지정상의 훈련수료 기준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 수료 처리 및 수료증을 발급한다.

제4조 (성실의무)

가.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하며 "을"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불이행 될 시 훈련의 중단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"을"은 기 지급된 훈련비를 "갑"에게 환불한다.

나. "을"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내용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실시하며, "을"의 귀책사유로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될 시 "을"이 책임을 진다.

제5조 (비밀유지)

가. "갑"과 "을"은 본 계약의 이행에서 직,간접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한다.

나. 상기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.

제6조 (해지)

"갑" 또는 "을"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최고하며, 불이행 당사자가 계속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,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제7조(근로시간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동의)
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외에 위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수당 등 일체의 조건이 없음을 서약합니다.

※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9조(훈련계약과 권리의무)


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(이하 "기존근로시간"이라 한다)내에 실시하되,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기존근로시간외에 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 (해석 및 합의)

본 계약서상의 조문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시,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, 기명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0 년 00 월 00 일

회 사 명 : **㈜가나다라**
 회사주소 : **서울시 00구 00동 0000-00**
 전화/팩스 : **Tel : 000-0000 Fax : 000-0000**
 대 표 자 : **홍길동 (직인)**

훈련기관명 : **국제금융회계학원**
 주 소 : **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39-14** 
 전화 / 팩스 : **Tel : (02) 598-5983 / Fax : (02) 598-0050**
 대 표 자 : **구순서**

본인은 위 계약상의 내용에 동의합니다.

훈 련 생 이 름 : **김 아무개**
 주민등록 번호 : **751204-2XXXXXX**
 휴 대 전 화 : **011-954-XXXX**

훈련생 서명 : **꼭 싸인 해 주세요.**
 근 무 부 서 : **재정관리부**
 직 위 : **과장**